

Korean Tax Update

February 2018, Issue 44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 [\[전문보기\]](#)

'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 관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2.13~2.27, 14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초)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보도자료\]](#)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 8.)한 바 있으며, 이에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함. 시행령 개정안은 2. 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중 공포될 예정*임. 주요 수정내용은 보도자료 참고.

- * (14개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정부는 2.20.(화)에 개최된 제 8 회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함.

- 동 법률안은 법 내용의 실체적인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주요내용은 보도자료 참고.

기획재정부는 '11년부터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1 차로 부가가치세법이 '13.6 월 개정('13.7 월 시행)되었고, 소득·법인세법이 개정되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13.12 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9 대 국회 회기 만료로 '16.5 월에 폐기되어, 그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임.
- 2 월 중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사회각계각층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사례 다수적발 [\[보도자료\]](#)

(그동안의 추진경과) 국세청은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특히 지난해 8.9. 이후 4 차례에 걸쳐 1,375 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596 명은 조사 진행 중에 있음.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3 월중 조사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임.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 제 2378 호, 2018. 1. 10) [\[전문보기\]](#)

2015년 3월 31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24일 브라질리아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주아킹 레비(Joaquim Levy) 브라질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1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를 이에 공포함.

[예규·판례]

[판례 1]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 두 48550 판결

- 원고 은행은 기업어음 발행기업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발행기업에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하였는데, 발행 및 할인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던 기업어음이 통상적인 결제 과정과는 달리 어음의 만기 전에 인출되었고, 그 소지인이 이를 직접 지급제시하여 원고 은행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았으며, 그러한 경위로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사안에서, ① 원고 은행이 발행기업으로부터 당좌예금계약 상 기업어음의 어음금 지급 외에 원천징수업무까지 명시적으로 위탁받은 바 없는 점, ② 원고 은행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할인액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업어음의 할인에 관여한 바 없고 어음금 지급 위탁과 관련하여 발행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 은행이 발행기업으로부터 위 어음금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수권 또는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 은행은 구 법인세법 제 73 조 제 4 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례 2] 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 두 48451 판결

-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님(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 두 8292 판결 참조). 또한,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3 항은 당초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1999. 12. 28. 법률 제 6048 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예외사유를 신설하였음. 그 후 2002. 12. 18. 법률 제 6780 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 17828 호로 개정된 것) 제 53 조 제 5 항을 두어 예외사유를 확대하였고, 다만 그 부칙 제 6 조에서 위 제 53 조 제 5 항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 26960 호로 개정되면서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 45 조의 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즉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으나(제 53 조 제 6 항 제 8 호), 그 부칙 제 7 조에서 위 개정 규정을 위 시행령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 그 제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된다고 보아야 함.

[판례 3]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 조 제 1 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 두 55329 판결

-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철도이용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기 위하여 공익서비스 수행자인 원고가 국토해양부장관과 체결한 이 사건 보상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아닌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시설·운영자금에 해당함. 그러므로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비과세사업에 관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보상액을 기초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 조 제 1 항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심판례 1]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的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조심 2016 지 0872, 2018. 2. 6.

-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심판례 2]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조심 2017 중 4979, 2018. 2. 6.

-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점,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충민원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 55 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3]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함

조심 2017 서 4669, 2018. 1. 31.

- 디자인팀은 브랜드별 컨셉과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 각 제품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나, 디자인실 소속 SI 팀의 활동은 제조부서와 디자인팀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배치와 진열 등에 관한 것이라 이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예규 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 2. 2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 21 조 제 5 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예규 2]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 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8, 2018. 2. 9.

- 내국법인이 2014. 1. 1. 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 325 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내용연수에서 100 분의 25 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 1. 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및 같은령 같은조 제 4 항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예규 3]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23 조 제 1 항 및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 2. 6.

-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23 조 제 1 항 및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예규 4]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86, 2018. 2. 6.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인 것임.

[예규 5] BOT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8. 1. 16.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4 조 제 3 호의 방식(BOT)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 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coe@kr.kpmg.com